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22
----------	------

제출일자 : 2023. 12. 6.

제 출 자 : 달성군수



## 1. 제안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표준조례안에 따른 제명 개정(제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조례의 근거 법령 명확화(안 제1조)

다. 용어 수정(안 제2조~제12조)

- “긴급 위험도”를 “위험도”로 수정
- “피해 시설물”을 “피해시설물”로 수정
-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의 장”으로 수정
- “달성군지역본부장”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 수정
-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로 수정
-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수정
-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대구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으로 수정
-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달성군 대책본부”로 수정

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조문 정비(안 제5조)

-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을 신설하여 자격 조건 세분화(제4항)
- 시설물별 평가반 운영 조항 신설(제5항)
- 지역대책본부장과 단체의 업무협약에 대한 조항 신설(제6항)

마.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삭제(안 제7조)

바.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신설(안 제7조)

사. 제9조의 조문을 ‘위험도 평가 지원요청 등’으로 변경(안 제9조)

아. 제10조의 조문을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으로 수정(안 제10조)

자. 안 제13조(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신설

차. 안 제14조(교육·훈련) 신설

카. 안 제1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신설

- 위험도 평가 계획에 대한 내용
- 평가 단원증에 대한 내용
-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

### 3. 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3. 9. 8. ~ 9. 28.)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특기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긴급 위험도”를 “위험도”로 하고, “피해 시설물”을 “피해시설물”로 하며, 제2조제3호 중 “긴급 위험도”를 “위험도”로 하고,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달성군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달성군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달성군지역본부장”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달성군지역본부장”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며,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대구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달성군지역본부장”을 각각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달성군지역본부장”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고,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달성군 대책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원을 구성한다.

④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단원의 구성 시 다음 각 호 각 목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 종류 건설의 건축 중 직무 범위가 건축구조인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 건축 중 전문분야가 건축구조인 고급 이상 등급 건설기술인

라. 그 밖에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종류가 건설 중 토목인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중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기술인으로서 같은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고급 이상의 등급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4항 각 호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달성군지역본부장”을 각각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험도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8조제1항 중 “달성군지역본부장”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달성군지역본부장”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고,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달성군지역본부장”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고, “피해 시설물”을 “피해시설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달성군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달성군 및 다른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 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위험도 평가 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을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달성군지역본부장”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중 “달성군지역본부장”을 각각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②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

-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위험도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위험도 평가단원은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 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 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⑥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 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 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시설 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⑦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대구광역시 달성군 <u>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지진 피해시설물 <u>긴급 위험도 평가</u>”(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재해 발생시 <u>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u></li> <li>3. “지진 피해시설물 <u>긴급 위험도 평가단</u>”(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li> </ol>	<p>대구광역시 달성군 <u>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진·화산재해대책법</u>」 제21조제4항에서 <u>위 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지진 피해시설물 <u>위험도 평가</u>”(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재해 발생시 <u>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 한다.</u></li> <li>3. “지진 피해시설물 <u>위험도 평가단</u>”(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li> </ol>

위험도 평가를 위해 달성군 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하 “달성군지역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4.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달성군 및 인근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① (생략)
- ② 달성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달성군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 ① 달성군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1. (생략)

위험도 평가를 위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달성군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4.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달성군 및 인근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① (현행과 같음)
- ② 달성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1. (현행과 같음)

2. (생략)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 단장”이라 한다)은 달성군 건설도시 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2. (현행과 같음)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달성군 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 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달성군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개정 2018. 7. 20.)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달성군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10)

⑥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단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달성군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③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원을 구성한다.

④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단원의 구성 시 다음 각 호 각 목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 종류 건설의 건축 중 직무범위가 건축구조인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 건축 중 전문분야가 건축구조인 고급 이상 등급 건설기술인

라. 그 밖에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경우 달성군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달성군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다른 직무종류가 건설 중 토목인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중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기술인으로서 같은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고급 이상의 등급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4항 각 호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달성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달성군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기타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② 달성군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0.)

-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21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험도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 ④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달성군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달성군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시설물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 ①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인근 자치단체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 ② 달성군지역본부장은 대구광역시 및 타 자치단체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달성군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 ①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달성군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달성군 및 다른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 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위험도 평가 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달성군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1조(경비지원)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

<신 설>

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달성군 지역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상황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단원은 달성군 지역대책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13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  
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⑥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⑦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